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리 주요 적발사례

2017. 10.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목 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리

- ① 생산시설 명의대여 ① 1
- ② 생산시설 명의대여 ② 2
- ③ 생산시설 소속 외 근로자 근무 3
- ④ 장애인근로자 주도적 참여 배제 4
- ⑤ 영리업체가 비영리법인 신규설립 후 생산시설로 지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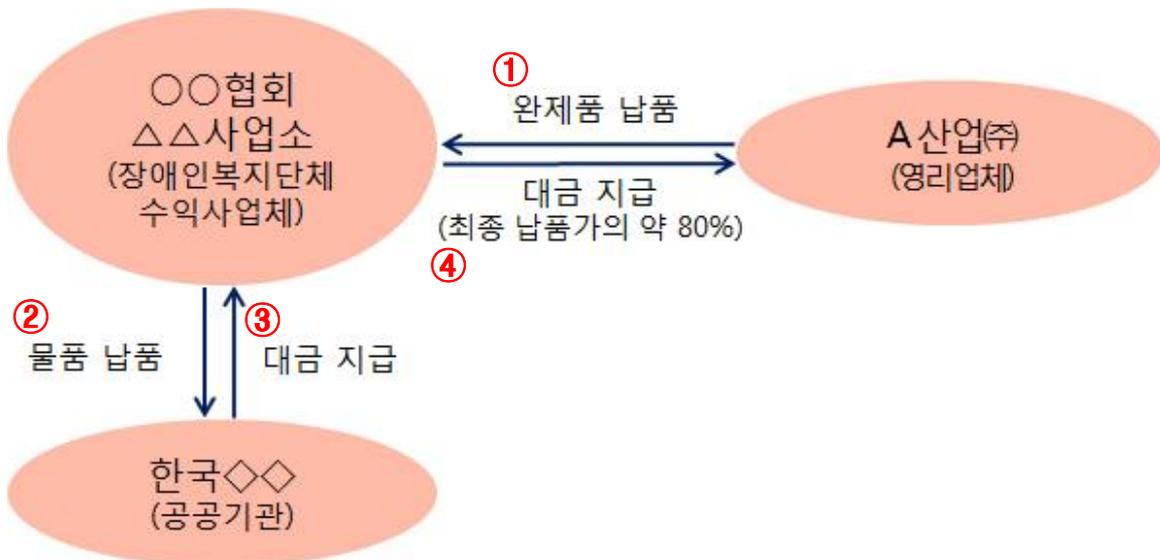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리

- ⑥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 6
- ⑦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절 사용 7
- ⑧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무단 사용 8

I.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리

사례 1

영리업체에 생산시설 명의대여로 공공조달 매출 80억원('14~'16년)
<○○협회 △△사업소(경기), '17.7. 현장점검, **수사의뢰**>



① 공공조달 우선구매혜택을 받기 위해 A산업(주)가 ○○협회 △△사업소로 위장하여 생산시설로 지정 의혹(생산시설 명의대여)

- △△사업소는 ○○협회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소 내에 영리업체인 A산업(주) 영업소가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A산업(주)이 운영
- 생산시설로 지정 후('14~'16년) 공공조달 80억원 매출

② △△사업소는 원·부자재 매입의 형태로 A산업(주)에 대금 지급

- A산업(주)은 △△사업소와 동일한 업종(파형관 제조)으로 지자체에 공장 등록
- 최근3년간 △△사업소 원·부자재 매입액의 약91%가 A산업(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부자재 고가 매입으로 제품 제조원가가 매출액의 93% 수준
- * A산업(주) 매입액 : 2014년 21억원(93.0%), 2015년 25억원(92.4%), 2016년 18억(86.8%)

사례 2

생산시설 명의대여로 공공조달 매출 15억원('16년)

<○○연맹 △△사업소(경기), '17.7. 현장점검, **수사의뢰**>



거래명세표

2016년 9월 30일 (공급받는자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상호 (법인명)	트랜스 성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서울시		
	주소	경기		업태	운수업 종목 화물운송주선,보관업		
합계금액		삼천오백칠십만이천칠백		원정		35,702,700	
일자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9/8	이사 화물트럭 임차비	5톤	8	320,000	2,560,000	256,000	
9/9	이사 화물트럭 임차비	5톤	26	320,000	8,320,000	832,000	
9/9	이사 사다리차 임차비	1톤	3	350,000	1,050,000	105,000	
9/10	이사 화물트럭 임차비	5톤	30	320,000	9,600,000	960,000	
9/10	이사 사다리차 임차비	1톤	3	350,000	1,050,000	105,000	
9/11	이사 화물트럭 임차비	5톤	27	320,000	8,640,000	864,000	
9/11	이사 사다리차 임차비	1톤	3	350,000	1,050,000	105,000	

① ○○연맹 '△△사업소' 명의로 계약수주 후, 실제 이사용역은 영리업체가 수행(생산시설 명의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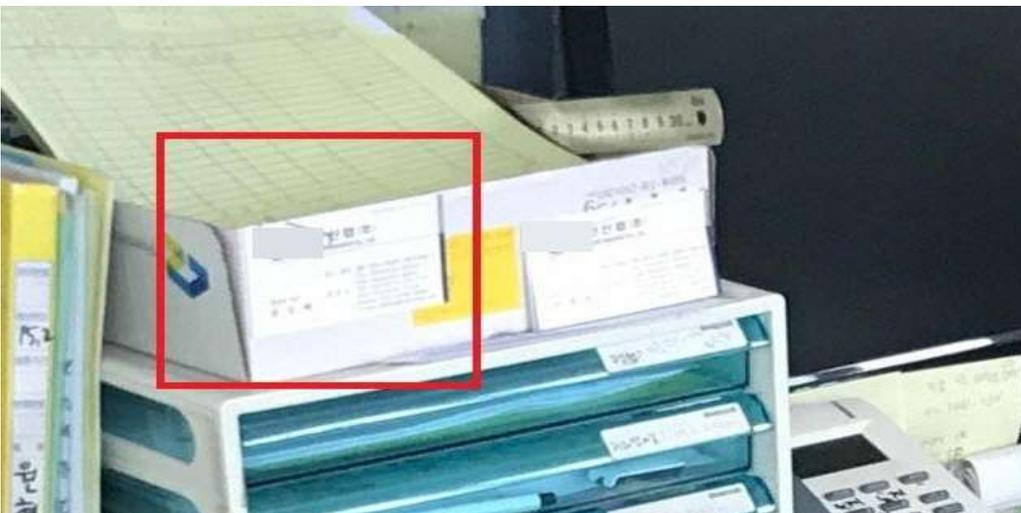
- 영리업체인 'B이사' 페이스북에 '△△사업소' 트럭 사진이 있으며, 이사용역 사진에 '△△사업소' 박스가 있음
- 'B이사'를 비롯 (주)D업체, E이사물, F운수는 동일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추정되며, 2016년 전체 매입액 중 위 4개소가 20.9%(2억5700만원) 차지
- ☆☆기관 이사 시, 영리업체(C트랜스)로부터 차량 및 사다리차를 하루 최대 33대를 임차하였으나, '△△사업소' 전체 직원은 13명에 불과

※ 국민건강보험 직원 인터뷰 결과, △△사업소 공단 이사용역('16.5월) 시 장애인근로자 부재

사례 3

생산시설 소속 외 근로자 근무

<○○협회 △△사업소(경기), '17.7. 현장점검, 지정취소>



① 동종 영리업체 'A산업(주)' 소속으로 추정되는 비장애근로자 발견
(장애인 고용기준 위반)

- 합동점검 시, ○○협회 '△△사업소' 사무실에서 비장애 근로자 3명 발견했으나 소속 확인을 거부함
- 동 사무실에서 A산업(주) 점퍼, 명함, 장부 등 발견

② 장애인 고용은 생산시설 지정 유지를 위한 최소기준만 충족

- 장애인 10명(지정 최소기준)은 주10시간 이내 근무하며, 임금은 36만원 수준으로 모두 동일
- 생산설비 자동화로 실제 필요인력은 비장애인 2명이며, 장애인을 출근 시키지 않거나 공장정리, 청소 등 단순작업에만 투입

사례 4

장애인근로자 주도적 참여 배제

<○○보호작업장(경기), '17.5. 현장점검, 제도개선>

근로계약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 보호작업장) 의 직원으로 채용계약함에 있어서 () 보호작업장) 의 장을 "갑"이라고 하고, 피채용자 ()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약정사항

가. 임용기간 : 2013년 4월 12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나. 근무장소(부서/직위) : 회사 사업장 및 업무상 필요 장소(생산부/조립사원)

다. "을"의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조명기구 조립, 검사, 포장 등

라.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휴게시간) 09:00 ~ 11:30

마.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월 ~ 금

○ 휴 일 : 근로자의 날(유급), 법정공휴일(무급), 토요일(무급휴무), 일요일(무급)

바.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임금

○ 시급 : 2,250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있음(○)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작업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 배제

- 장애인근로자 20명 중 8명에게 최저임금의 1/3지급
- 하루 2.5시간 근로계약 체결하여 월 10만원 내외 급여 지급

② 생산시설 지정으로 매출은 급상승한 반면, 장애인근로자 고용 증가는 정체

- 매출 ('14년) 6억 → ('16년) 82억
- 장애인고용 ('14년) 18명 → ('16년) 20명

⇒ (제도개선) 연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인원 산출('18.~ 법령개정) 소정근로시간(예. 월 60시간) 도입하여 임금수준 상향 유도('18.8 고시개정)

사례 5 영리업체가 비영리법인 신규설립 후 생산시설로 지정
 <○○복지회(서울), '17. 7. 현장점검, 제도개선>

3. 전년도(2016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복지회)

(단위 : 원)

과 목	수 입		과 목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① 회 비	정회원회비	16,800,000	① 인 건 비	사무기획부 인건비	69,707,310
	준회원회비	8,740,000		상근직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075,399
⑤ 사업수익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52,845,080	③ 사업지출	디자인출판 직업재활부 인건비	172,049,299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25,000,000		인쇄제작 직업재활부 인건비	94,518,525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33,672,000		사업개발비 집행	31,250,000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10,000,000		전문컨설팅비 집행	11,000,000
⑥ 기타수입	수익사업 회계 전입금	455,728,655	기타 인적용역비	6,712,221	
	장애인고용지원금	42,502,000			
합 계		645,287,735	합 계		645,287,735

① 'K기획(인쇄업체)' 대표가 생산시설 지정을 위해 ○○복지회(장애인복지단체) 설립 허가 받고, 'K기획' 대표직은 배우자에게 양도

- ○○복지회는 K기획에 인쇄디자인 등 1억7000만원 지출('16년)

②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실적이 없어 '16년 법인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허가 주무관청에 제출

- 회비수입(2600만원), 수익사업 회계전입금(4억6000만원)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수익사업체(법인 인쇄사업장)로 전출하지 않았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을 법인 지출로 허위기재

- '16년 동 법인 수익사업(매출 18억)에 대한 결산서 제출 누락

⇒ (제도개선)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운영법인의 기여도 기준 신설('18上, 고시개정)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실적, 수익금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17下, 지침제정)

II.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리

사례 6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

① 고용 장려금¹⁾ 사용 부적절

- △△사회복지법인은 '15~'16년 2년간 고용 장려금 4억6000만원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법인 직원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사용

② 강사비 부당 지출

- 산하 복지시설(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직원 교육 명목으로 매주 1회 ◆◆교회 목사를 초빙하여 종교 활동(예배·설교)만 후, '15. 1.~'17. 3월까지 매회 20~30만원씩 총 1740만원을 강사료로 부당 지출
- 위 목사에게 거주시설 입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는 명목으로 '15. 1.~'17. 3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810만원을 강사비로 지급, 강의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강의 여부 확인 불가
- * 해당 목사에게 각종 활동의 대가로 매월 약 250만원 상당을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

③ 법인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부적절

- 법인의 이사장이 근로작업장 시설장을 겸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 받을수 있는 기준연령(65세)이 도래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 '13~'16년 퇴직시까지 보수지급 기준 없이 법인 이사회 및 시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의 예산으로 총 2억43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 * 2012년 인건비 보조 지급 기준(복지부지침) : 기본급 334만원(30호봉)
2013년 법인 예산으로 인건비 수령시 : 기본급 490만원
- 법인의 이사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 예산에서 '15. 7. ~ '16. 12월까지 총 817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적립하여 수령

1)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장애정도, 성별,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원

①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의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고, '15년부터 법인의 은행 용자금 1045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

- 지정후원금 신청서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정후원금 신청자는 252명이나 법인이 보관중인 지정후원금 신청서는 111매로 확인
- '13년부터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 78명의 급여에서 매월 1~8만원의 후원금을 원천징수하여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고, 매월 116만원을 법인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음

②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 법인 업무용 차량을 구매('13.11)하면서 1686만원의 대출금을 '13.12~'16.11월까지 36회에 걸쳐 후원금으로 상환
- 요양원 원장(현 법인 대표이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유류비, 통행료 2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집행
- 임직원 경조사비, 설·명절 선물 구입비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15년 700만원, '16년 768만원 집행
- 법인·시설 직원 예배를 위해 방문한 목사의 교통비로 18회에 걸쳐 총 210만원 지출
- 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 호텔 멤버십 연회비로 72만원 지출

① △△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금전을 공동 부담하게 하여 아파트 2채 구매

- ▶ 체험홈 1호 : 면적 34평, 취득일자 '11.1. 구입금액 1억8500만원, 공동소유자 6인, 1인당 부담액 3176만원
- ▶ 체험홈 2호 : 면적 25평, 취득일자 '08.12. 구입금액 1억600만원, 공동소유자 4인, 1인당 부담액 2650만원

-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10명중 2명의 부담비용이 부족하자 입주시설 다른 장애인 중 대리인에게 금전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 4명에게 각각 1600만원, 680만원, 300만원, 280만원을 대리인 동의 없이 돈을 빌리게 함
- 구입한 아파트를 2015년부터는 체험홈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파트 1채는 법인의 전 대표이사겸 시설장이 거주('15~'17)하고, 다른 1채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15~'16)

② △△장애인거주시설은 보조금으로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19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83만원 집행하였음에도, 시설입소 장애인 개인금전 85만원을 총 6회에 걸쳐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